

의안번호	2206114
의 퇴 인	윤상현의원
회 답 일	2025.2.11.
추계번호	24D6498
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동안 존속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,250억 6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5,915억 9,000만원 (연평균 3,183억 1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	517,600	517,600	517,600	—	—	1,552,800	310,560
위원회 운영	7,461	7,606	7,755	7,907	8,061	38,790	7,758
합 계	525,061	525,206	525,355	7,907	8,061	1,591,590	318,318

주 1.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 2. 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(위로금) 제1항	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 -사망·행방불명: 1명당 1억원 -부상: 1명당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 ※현행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현행 특별법”이라 한다)은 사망·행방불명의 경우 1명당 2,000만원, 부상의 경우 1명당 2,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 ※현행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	의무규정
2	안 제7조(위로금) 제2항	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 지급	의무규정

3	안 제8조(미수금 지원금)	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환율,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 ※현행 특별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 공제	의무규정
4	안 제9조(의료지원금)	강제동원피해자 중 생존자가 노령·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지급기준, 지급방법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 ※현행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차액을 지원	의무규정
5	안 제11조(일제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), 안 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및 제21조(위원회의 존속기간 등)	-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심의·의결(안 제11조) -상임위원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12조) -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,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(안 제21조)	의무규정
6	안 제39조(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설립등)	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,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(제1호) 사망·행방불명 위로금	○	-
	안 제7조(위로금) 제1항 (제2호) 부상장해 위로금	×	제정안은 강제동원 희생자 중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-(현행)2,000만원 상한 → (제정안)1억원 상한 -현행 특별법(국외강제동원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함)에 따른 부상장해 위로금 지급 현황: 13,993건, 102,185백만원(건당 평균 730만원)

2	안 제7조(위로금) 제2항	×	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제동원 생환자로 결정된 인원은 188,373명이나, 강제동원 생환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
3	안 제8조(미수금 지원금)	×	제정안은 미수금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시 환율,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다만, 현 시점에서 미수금피해자의 규모, 피해액, 대통령령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영 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-현행 특별법(국외강제동원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함)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 지급 현황: 16,228건, 52,182백만원(건당 평균 322만원)
4	안 제9조(의료지원금)	×	제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가 노령·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치료 또는 보조장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 다만 현 시점에서 의료지원금 지급대상,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액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-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의료지원금과 관련하여 현재 대일항쟁기강제동원 관련 생존자는 1,000명 미만이고,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,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임
5	안 제11조(일제강제동원피해조사및위로금등지급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), 안 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및 제21조(위원회의 존속기간 등)	○	-
6	안 제39조(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등)	-	미대상: 제정안은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,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만, 현행 특별법에 근거하여 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’이 설립·운영 중이며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 기준으로 ‘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(2432-300)’ 사업에서 38억 7,700만원을 보조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의 수는 현행 특별법에 근거한 ‘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’ (이하 “구 위원회”라 한다)가 심의·의결한 대상자 수로 가정하고,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수는 현행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이 위로금을 지급 신청하여 기 지급된 건수로 가정
-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규모, 구성 등이 구 위원회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구 위원회의 활동기간(2010.3. ~ 2015.12.)의 평균 인건비와 평균 위원회 운영비를 준용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¹⁾과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²⁾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 시행에 따른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회 운영비를 추가재정소요로 추계

가.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

- 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

(2024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(CPI)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2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

(2024년 11월 기준, 단위: %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	2.5	1.9	1.9	1.9	1.9	1.9	1.9

-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구 위원회의 활동기간(2010.3. ~ 2015.12.) 중 피해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가 완료되고,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로 결정된 인원은 1,224명으로 1억원의 위로금 지급
- 현행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기 지급받은 희생자(국외 강제동원 희생자)는 17,880명으로 지급받은 2,000만원을 공제한 8,000만원의 위로금 지급
- 제정안 제37조3)에 따르면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위로금 지급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1,224명은 3년간 연간 408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17,880명은 3년간 연간 5,96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
- 제정안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지급하였을 때, 추가재정소요로 1조 5,528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[표 2]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 분		2026	2027	2028	합계
국내 강제동원 희생자	대상자(A)	408	408	408	1,224
	지급단가(B)	100	100	100	-
	소계 (C=A×B)	40,800	40,800	40,800	122,400
국외 강제동원 희생자	대상자(D)	5,960	5,960	5,960	17,880
	지급단가(E)	80	80	80	-
	소계 (F=D×E)	476,800	476,800	476,800	1,430,400
추가재정소요 (G=C+F)		517,600	517,600	517,600	1,552,800

주. 대상자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3) 제37조(소멸시효 등) ① 제7조에 따른 위로금 및 제8조에 따른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나. 위원회 구성에 따른 운영 경비

- 제정안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존속기한을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와 위원회 운영비를 추계
 - 제정안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연장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현행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는 2010년 3월에 설치되어 2015년 1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인건비는 연평균 27억 5,500만원, 위원회 운영비는 31억 6,000만원을 집행함
-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가 5년 동안 존속할 경우의 인건비 및 위원회 운영비는 2010~2015년의 인건비 및 위원회 운영비의 평균 집행액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추계 기간 동안 국회예산처 전망 공무원 임금 평균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총 387억 9,0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[표 3]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안 제11조(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), 안 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및 제21조(위원회의 존속기간 등)	인건비	3,492	3,558	3,626	3,695	3,765	18,136
	위원회 운영비	3,969	4,048	4,129	4,212	4,296	20,654
	합계	7,461	7,606	7,755	7,907	8,061	38,7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4. 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동안 존속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,250억 6,1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 5,915억 9,000만원 (연평균 3,183억 1,8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	517,600	517,600	517,600	—	—	1,552,800
위원회 운영	7,461	7,606	7,755	7,907	8,061	38,790
합 계	525,061	525,206	525,355	7,907	8,061	1,591,590

주. 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 가능

자료: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nabo.go.kr